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8. 27.(목) 10:00

#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 
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
(안전도시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## 2. 제안이유

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2020. 7. 24. ~ 2020. 8. 13.(20일 이상)
  - 2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  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현행 조례 개요

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는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이후 2013년 3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,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

- 기존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의 개정(2016.1.27. 개정, 2017.1.28. 시행)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
-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

### 다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되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권한 위임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」 제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다면 조례폐지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(이하 "관계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(지역·지구·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(이하 "개발계획등"이라 한다)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협의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## □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제73조(권한의 위임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 
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>

1. 시·도지사 및 시·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·도지사
2.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[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(이하 "해당 권한"이라 한다)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]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, 2018. 12. 31.>

1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
3.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
4.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
5.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
6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
[전문개정 2012. 8. 22.]